

확 인 서

회 원 번 호		입회자명(법인명)	
분양가(입회원금)		생년월일(사업자번호)	

상기 본인은 양도인 _____로부터 호반써밋(주)(이하“회사”라고 한다)의 정회원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한다.

- 아 래 -

1. “입회자”의 회원 자격 약정기간은 “회사”의 전산등록(회원신상등록)일로부터 5년이며, 회사 또는 회원이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원은 약정기간 만료일(5년이 된 날)에 당연 퇴회된다. 회원이 퇴회된 경우 회사는 퇴회 절차에 따라 분양가(입회원금)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아울러 회사 또는 회원이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기간은 같은 기간(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) 및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. 단, 만료 1개월 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장된 회원이라도 이후 언제라도 퇴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.

(인) 인감날인

2. “입회자”의 회원 자격 內 이용조건은 “회사”의 운영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그러한 변경사항을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3. “입회자”가 “회사”의 골프장 시설을 이용 시 회원 요금으로 예약 가능한 횟수는 다음과 같으며, 횟수를 초과한 예약의 경우 “회사”에서 별도 공지된 요금으로 적용됨을 확인한다.

주 중	년12회(월 1회)
주말(공휴일포함)	년6회(2개월에 1회)

4. 본 확인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양도인이 입회한 당시의 회칙 및 이용약관이 아닌 “입회자”가 회원등록 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회칙 및 이용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한다.
5. “입회자”는 상기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 년 월 일 인감날인 한다.

(입회자)

주 소 :

주민번호 :

성 명 :

(인) 인감날인

호반써밋 주식회사 귀중